

## 조교임용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교법인 루터교학원 정관 제40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루터대학교(이하“본교”라 한다)에 근무하는 조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교수의 연구 보조와 사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자격)** 조교의 자격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하며,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.  
(2017.2.27.개정)

1. 행정조교
2. 수업조교(Teaching Assistant, TA)
3. 연구조교(Research Assistant RA)

**제3조(임용)** ① 조교의 임용기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임용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. (2013.12.23.개정)

② 조교는 교학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용한다. (2016.12.30.개정),(2017.2.27.개정)

③ 조교의 정원은 매년 총장이 정한다.

**제4조(임용서류)** 조교로 임용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임용 신청서
2. 이력서
3. 졸업 및 성적증명서
4. 주민등록등본

**제5조(임기)** ① 전임조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단, 연임할 수 있다.

② 최초 3개월은 실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, 근무태도에 따라 계약종료를 조기에 할 수 있다. (2019.8.28.개정)

**제6조(임무)** ① 행정조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조한다. (2017.2.27.개정)

1. 근무부서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
2. 학생지도 및 상담업무
3. 기타

② 수업조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조한다.

1. 학생의 수업지도 업무
2. 강의준비, 출결점검, 과제물 수합, 수업 모니터링 업무
3. 실험·실습·실기 준비 및 관리 업무
4. 실험·실습·실기 기자재 관리 업무
5. 전공 사무 (2020.2.25.개정)
6. 기타

③ 연구조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조한다.

### 3-3-10 조교임용 규정

1. 연구자료의 조사 및 정리 업무
2. 연구와 관련된 실험 및 조사 업무
3. 연구소 또는 교수의 연구 및 교육 보조 업무
4. 기타

**제7조(보수)** ① 조교의 보수는 본교의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다.

②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. (2023.08.02.개정)

**제8조(금지사항)** 조교는 다음의 사항을 금지한다.

1. 교수를 대신하여 강의를 하는 일
2. 학교의 시설물을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일
3. 교수의 성적표를 작성하는 일
4. 기타 학교의 규칙을 위반하는 일

**제9조(해임)** 조교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학칙을 위반하거나 본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할 때에는 총장이 해임할 수 있다.

**제10조(평가) 삭제** (2017.2.27.)

**제11조(복무)** (2018.8.24.신설)

- ① 조교는 지정된 시간에 출근하여 즉시 전자출근부에 확인하여야 한다.
- ② 조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, 토요일은 휴무(休務)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조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,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. 단, 부서 업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- ④ 총장은 조교의 직무의 성질,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연근무를 시행할 수 있다.
- ⑤ 연장근무 및 휴무일에 근무한 조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행정부서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.
- ⑥ 이외 조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“직원 복무 규정”을 준용한다.

#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.